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 // 개 요

가. 목 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 도움 및 위기요인 개선
-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

나.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다. 연 혁

○ '05년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 시범 운영 후 '08년 16개 시·도로 확대운영

라. 사업방향

- 필수 연계기관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상담·보호·기급지원 등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 지역 내 다수기관의 관여 및 협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CYS-Net체계 내에서 우선 지원 및 사례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 위기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지도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 보완 예정
- 비행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정책 요구에 부응한 청소년동반자의 활동영역 다양화 및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5 청소년 복자씨업

- 위기 수준, 우선순위 및 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문제해결, 맞춤형 지원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외 학교밖 청소년, 쉼터·회복지원시설 등 시설퇴소후 가정복귀 청소년, 학교 및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 의뢰 청소년, 소년법 보호처분 청소년 등 청소년 동반자 활동 영역 확대
- 지역 CYS-Net 사업의 수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특성화된 상담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가능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CYS-Net 사업 운영기관 및 필수연계기관에서 활동. 배치 가능

마. 사업 내용

-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 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직무능력 중 지역 CYS-Net 사업의 요구도가 높은 직무 우선 수행
-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상담, 공통의 생활·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복지·고용·보건 등 여러 영역의 자원 관리 및 연계 활동 강화로 서비스 의 통합적 제공

바. 배치 현황 및 성과 목표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현황

구분 연도 200	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 동반자 수)명	1,270명 (추경 800명)	880명	980명	985명	1,000명	1,044명	1,066명	1,146명	1,261명

- (2018년도 성과목표)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와 만족도 평가
 - ①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
 - ⇒CYS-Net 시스템에 입력된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는 【붙임1】을 참조하여 시·도별 최소인원 이상 관리

- ②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 정도 : 90.4% 이상 ※ 지자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동반자 성과지표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 ③ 기타 CYS-Net운영 공통 성과지표 적용

가. 대상청소년 및 발굴경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및 청소년전화 1388(문자상담(#1388), 청소년사이버상담 센터(cyber1388.kr) 포함),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CYS-Net에 유입된 위기(징후) 청소년
- 자살(징후), 범죄 탈선 등으로 인한 소년범(보호관찰청소년 포함),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유형의 중·고위험군 청소년 발굴 강화를 통한 서비스 소외 (탈락) 청소년에 대한 구호 및 지원강화

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절차

- (위기 스크리닝) CYS-Net에 유입된 위기(징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 * 위기 스크리닝지는 [서식2] 참조
- (사례판정회의) 위기 스크리닝 결과 1차 위험요인영역 5점 이상인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실시(초4 이하는 4점 이상)
 - * 수석동반자 또는 선임(가장 근무경력이 오래된)동반자의 주도하에 개최(최소 3인 이상)
 - * 사례판정회의 구성원 : 센터 상담담당팀장, 청소년동반자, 센터 내 상담원 등
 - * 사례판정회의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도 참석하여 진행할 것
- (사례배정) 사례판정회의결과 선정된 중·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동반자 지원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우선 적용대상

-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학교밖),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중·고위험군 청소년
- 필수연계기관에서 의뢰한 고위기청소년 및 2개 이상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중·고위 험군 청소년
- 군장병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국방부(군부대) 의뢰 위기 군장병
- 지역 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수료자 등
 - * 다만,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할 경우 CYS-Net 사례배분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다. 서비스 주요 내용

-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종합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
- 대상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와 연결하여 프로그램 연계
 - 기본적으로 대상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 제고를 위한 상담제공이 가능한 청소년동반자와의 연결 필요
 - 복합적 문제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 및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 필요
 - 성폭력 경험자이거나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등 높은 위기수준의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상담자가 소수로 연결되어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관련 서비스 기관에 연계 의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CYS-Net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 필요
 - CYS-Net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중·고위험군 등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 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도록 함

3 청소년동반자 선발 및 교육

가. 자격기준

- (공통) 자격기준
 -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자격 요건
 - ① 해당 자격증 소지

■ 해당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 상담교사 2급 이상

-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
 -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전일제동반자) (자격요건 ①&② 충족)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18년은 ②요건 해석 시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시간제동반자)
 -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단, 자격요건 ①&② 충족자를 우선 채용하되, 자격요건 ③ 충족자 비율을 줄여 나갈 것
- (유의사항)
 -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월 이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정. 다만, 이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_*$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 운영(안)을 준용<지침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관리 참 $_{
 m T}>$
- 청소년동반자는 중·고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동반자의 역량이 중요하기에 2019년부터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나. 선발

- 채용 절차 : 공개경쟁 원칙
 -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별하여 선발
 - 선발공고 시 청소년동반자 자격기준, 활동시간 및 근무내용, 급여기준 등을 사전에 공지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매뉴얼」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전자도서관>정보검색>본원간행물 (PDF) 검색 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2013년 개정판)"의 내용 확인 가능
 - 임용 시 근로계약서(참고 : 서식1) 작성
 - 기타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기준을 준용함.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채용이 불가능하므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필요

○ 유의사항

- 지자체는 【붙임1】의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배정 기준인원을 참조하여, 연중 청소년동반자 운영인원이 최소한 배정 기준인원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동반자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 신속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명 이상 동반자 배치 운영 권고
- 동반자의 사례회의 참석,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보고서 제출 등 사업수행 주체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의 2/3 이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중도해지 가능함을 계약서 내용에 첨부하여야 함
- 청소년동반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취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또한, 이번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과 기존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중 다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번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 적용
- 정규직 전환 지원 수당(대상 : 직영센터)
- 정규직 전환 예산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을 경우 집행
- 정규직 전환 지원 수당 항목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 전환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 예산 집행 불가(반납조치)
- 센터장은 동반자 채용(임명)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과 동일한 양식으로 동반 자증 발급: CYS-Net 운영의 【서식15】참조

다 교육

- 모든 전일제 청소년동반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슈퍼비전 제외)을 수료해야 함
 - 특히, 신규 전일제 청소년동반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함
 - ※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상시 개설하는 신규자 교육(이러닝과정)을 연도내 수료해야 함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부(☎ 051-662-3092)
- 단, 모든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는 연간 6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슈퍼비전 제외)을 수료하여야 함
 - 특히, 신규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함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센터 주관 직무연수 및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이러닝 연수 등(주관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경우만 인정함)
 -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교육이수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2에 따른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도 포함함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록 :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에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 일정 공지 및 신청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일정공지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 051-662-3081,3083)
-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교육을 반드시 총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23)
 - 아동학대 예방교육24)
 - ※ 해당 교육은 업무관련 교육 15시간(시간제 동반자 : 6시간)과는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교육

- (일정안내) 1월 중 CYS-Net 종합정보망에 교육과정 공지(예정)
 - 월 단위 교육과정 운영
- (세부과정)
 - 필수과정 : 서비스 대상 청소년 접촉 시 매뉴얼 활용과 위기대응능력 제고 교육
 - 선택과정 : 청소년동반자의 직무교육, 윤리교육, 특화교육 및 각종 상담기법 등
- (행정절차)
 - 상담원 개설 집합교육 참석 시 상담원 문서를 근거로 소속기관장에게 '교육근무명령 승인'을 받고 교육 참석 및 출장비 지급 가능

²³⁾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²⁴⁾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가능

가. 활동(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 배정기준
 - 분기당 평균 시간제 1인당 6사례 이상, 전일제 12사례 이상 기준으로 사례수를 배정하며 위기 유형에 따라 사례관리 개월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사례의 경중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관련근거를 남길 것
 - 배정시 고려 사항 : 가급적 청소년과 근거리 거주 청소년동반자를 담당으로 우선 배정
 - 배정 사례 목표
 - 전일제 연 48사례 이상, 시간제 연 24사례 이상
 -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 받은 청소년에 대해 연 사례수의 5% 이상을 의무 사례 관리할 것
 - 단, 수석동반자 및 군장병 전담 동반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시·도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사례관리 수행 가능
 - * 수석 동반자 연 35사례 이상, 군장병 전담 동반자(전일제 연 35사례·시간제 연 18사례 이상)
 - * 군장병 전담 동반자의 경우에도 시·도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상 반영해야 함
- 사례관리는 1사례당 3개월 이내 종결을 원칙으로 하며, 사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사례 종결시에는 종결보고 필)

5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운영

- (운영 방식) 시·도별 2가지 운영방식 중 택일
 - ① 수석 청소년동반자 2명 운영
 - ② 수석 청소년동반자 1명 운영 및 교육 등 사업 추진
- * 수석 청소년동반자 1명을 운영하는 시·도는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 등은 CYS-Net 사업을 준용하여 운영)
- □ 수석 청소년동반자
- (자격요건) 2017년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 시·도별 사정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발) 공개채용 원칙
 - * 시·도에서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인원) 시·도별 1인 이상(최대 2명) 운영하여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실시
 - * 시·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이를 사업계획서 상 반영해야 함
 - ** 수석 동반자는 시·도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단, 시·도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 센터에서 선발 가능함.
- (사례 수) 수석 청소년동반자는 전일제동반자(연 48사례 이상)보다 사례관리 수를 조정(연 35사례 이상)하여 운영 가능
- (수석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컨설팅 운영 내용)
 - ① 관할 시·도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
 - 청소년동반자 운영 우수사례 발굴,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운영현황 보고(분기별)
 - ② 관할 시·도 청소년동반자 사업 컨설팅
 - 사례관리 및 슈퍼비젼
 - 재난 등 위기사례 발생 시 위기개입 협력
 - 사례발굴, 기관연계 등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
 - ③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청소년동반자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결과보고) 익년도 1월 31일까지 수석동반자가 작성하여 청소년동반자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시·도 지자체를 통해 여성가족부 제출
 - * 보고양식 : (서식 8) 참고

나. 청소년동반자 근무형태

-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자(수석 동반자 포함)는 주당 4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주당 12시간 근무
 -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 원칙

○ 근무특성

-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로 근무시간·일자 조정 가능
- 청소년의 도움 요청 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5일 근무'의 기준이 아님

○ 활동비

- 기존의 운영 상황에 근거하되 지역사정 따라 조정 가능 【붙임2】참조
- 청소년동반자 요구 자격요건, 근무여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비 지급일 : 월별 특정일 지정하여 채용계약서에 명시

○ 기타

- 사업수행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일제·시간제 등 적정인원을 안배하여 지역 내 팀 단위 구성 운영 가능
- 지자체 및 센터는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노력을 하여야 함

5 // 행정사항

가.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 1) 국고보조율 : 50%(지자체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예산배정액 외에 추가 예산 반영 권장)
- 2)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 동반자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사무기기 등 임차 또는 자산취득, 사무실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동반자 활동과 무관한 출장여비(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보수교육 참여), 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비로 집행 불가
-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CYS-Net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예산으로 지원 (17개 시·도)

3)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 서를 당해년도 1.15까지 제출 <서식3, 4> 참조

4)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보고

- 사업수행 주체(센터 등)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자체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서식5, 6> 참조) 제출
- 시·도지사는 전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31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 <서식5, 6> 참조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반납액 = 국비 집행잔액 + 국비 결산이자)

나. 월별 실적 등록

- 청소년동반자 지원실적을 CYS-Net 종합정보망에 매일 등재
 - 센터 내 청소년동반자 담당 직원 또는 수석동반자는 매주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
 - 학교 밖 청소년 방문상담의 경우, 【붙임3】을 참고하여 CYS-Net 종합정보망 별도의 탭에 관리되도록 등재
 - 군장병 정서 심리 상담의 경우, 【붙임4】을 참고하여 CYS-Net 종합정보망 별도의 탭에 관리되도록 등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월 추진실적과 동반자 현황을 소정양식에 의거 센터가 실적입력을 마감(익월 5일)한 이후 2일이내(공휴일의 경우 당해일이 지난 첫 근무일)에 여성가족부에 보고

다.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6 사업 평가 및 현장점검

가. 평가 및 현장점검

○ 센터(CYS-Net) 평가 및 현장점검을 준용하여 실시

나. 지도·감독

- 위기청소년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 1명 이상 배치 권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센터가 연초에 세운 연간연계지원 목표인원 및 성과지표에 대해 분기별 지원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 평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행정지도
- 예산집행 등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지도·감독 실시 * 관련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16조
- 청소년 동반자 근로현황 일모아시스템 입력,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 수시 지도·감독

- 【붙임1】 2018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인워 및 사례관리 목표
- 【붙임2】 2018년 청소년동반자 시·도별 예산 및 활동비, 사업운영비 편성 기준
- 【붙임3】 학교 밖 청소년 방문 상담
- 【붙임4】 찾아가는 군 장병 정서 심리 상담
- 【참고1】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 부) 中 청소년동반자 관련 주요 내용
- 【참고2】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참고3】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1】 청소년동반자 근로계약서(예시)
- 【서식2】 위기 스크리닝지(양식)
- 【서식3】「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교부 신청서」
- 【서식4】「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
- 【서식5】「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서」
- 【서식6】「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 【서식7】「○○ 시·도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계획서」
- 【서식8】「○○ 시·도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결과보고서」

(단위 : 명)

						E.3.13		(원제 . 경)
						동반자수		수혜 청소년 수*
	시•	도	멸		전일제 (수석 포함)	시간제	계	(사례관리목표)
서	울	특	별	시	29	132	161	4,560
부	산	광	역	시	27	85	112	3,336
대	구	광	역	시	19	44	63	1,968
인	천	광	역	시	14	47	61	1,800
 광	주	광	역	시	12	29	42	1,272
대	전	광	역	시	11	43	54	1,560
울	산	광	역	시	7	31	38	1,080
세	종 특	별	자 치	시	2	5	7	216
 경		기		도	71	214	285	8,544
강		원		도	17	31	47	1,560
	청		북	도	10	32	42	1,248
 충	청		남	도	15	35	50	1,560
전	라		북	도	15	21	36	1,224
전	라		남	도	16	38	54	1,680
경	상		북	도	19	60	79	2,352
 경	상		남	도	19	96	115	3,216
제 :	주 특	별	자 치	도	4	11	15	456
	합	;	계		307	954	1,261	37,632

- ※ 지자체는 위 배정인원을 연중 최소 운영인원 이상으로 준수할 것
- ※ 신속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명 이상 동반자 배치 운영 권고
- ※ 수혜청소년 수(사례관리목표) 산출근거 : 전일제 연 48사례, 시간제 연 24사례
- ※ 수석동반자 및 군장병 전담 동반자 운영 시·도의 경우, 위 사례관리목표 수 안에서 최소 목표 사례 이상으로 재계산하여 사업계획서상 반영·제출 후 관리
- ※ 수석동반자는 시도별(세종시 제외) 2명 이내 배치



붙임 2 2018년 청소년동반자 시·도별 예산 및 활동비, 사업운영비 편성 기준

1. 시·도별 예산

- 지역별 청소년동반자 인원배정에 따른 예산액 산출
 - * 활동비(전일제 월 약 2,196천원, 시간제 월 818천원) + 사업운영비 적용
- 2. 활동비(① 보수 + ② 사례진행비)
 - ① 보 수
 - 전일제 동반자 : 월 2,041,000원 기준
 - 시간제 동반자 : 시간단가 15.400원 이상(주당 12시간 이내 근무)
 - * 보수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금액으로 최소기준을 의미, 지방비 추가 투입시 보수 상향지급 가능
 - * 보수는 동반자별 경력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 지급 가능
 - * 법령에 따른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보수에 포함됨
 -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및 소득세, 퇴직급여(전일제 동반자로 12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등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 시간제 동반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 ② 사례진행비
 - :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보조금 등의 경비
 - 전일제 동반자 월 155,000원/시간제 동반자 월 78,000원 기준
 - 단,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사례당 단가 적용 가능
 - * 사례관리를 위한 원거리 출장비, 유류비는 내규를 통해 가능한 범위내 지급 가능하며, 정해진 내규가 없을 경우, 「2017년 청소년 사업 안내」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의 【별표3】출장여비 지급 기준의 '자가용 이용시 운임의 산정' 참고
 - ③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단가: 수석 동반자 1인당 월 150,000원 기준

3. 사업운영비

- 집행총액 범위(10%) 이내 적정 분배
- 교육비, 회의비(팀회의, 자문회의 등) 등
 - * 사무용품, 기타 운영비 등은 센터 운영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 사업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방상담사업비 등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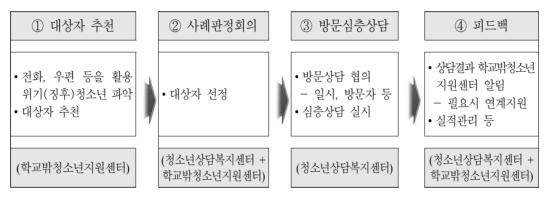
1. 사업개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지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2. 지워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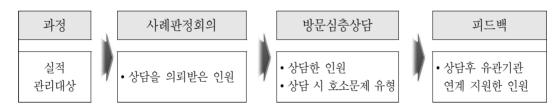
○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박 청소년 중 방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3. 지워절차



- ※ 위기(징후)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중 "서비스를 거부" 하였더라도 CYS-Net 체계에서 적절 한 개입이 없을 경우 고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 ※ 상기 명시된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일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가능

4. 실적관리



5 청소년 복지사업

1. 사업개요

- 자살시도, 군무이탈 등 군 복무 부적응 위기 장병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인력(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심층상담' 추진
 - * 인천·강원·경기(광명, 구리, 동두천, 양주, 하남)지역 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 지워대상

- 운영 지역 내 상담 희망자 중, 해당 부대 인사장교의 추천으로 대상 선정* 중위기 이하(B, C급) "배려병사"를 주 대상
 - * 자살(자해), 군무이탈 등 고위기 군장병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우선 상담

3. 추진체계

○ 해당 부대 인사장교 소요 제기⇒시·도(시·군·구) 사업 담당자 통보⇒시·도(시·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 동반자 지정·파견

① 대상자 추천 ② 위기 스크리닝 ③ 방문심층상담 • 수요 지역별 상담장병 • 위기 수준별 방문순위 선정 통보 • 우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리스트 송부 및 상담의뢰 • 방문상담 협의 위기 스크리닝 - 위기유형 등 상담소요 - 일시, 방문자 등 • 상담 우선순위 선정 작성 통보 • 심층상담 실시 (국방부) (각 지자체+청소년 (각 지자체+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각급 사단 상담복지센터) ④ 사례관리 ⑤ 피드백 • 상담결과 군부대 통보 •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 등을 - 군병원 입소 의뢰 등 통한 사례관리 • 성과분석 등 (각 지자체+청소년 (각 지자체+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국방부)

- 4. 군장병 정서심리상담 실적보고
 - ※ 매월, 매분기 보고한 군장병 정서심리상담 실적이 CYS-Net 종합정보망 입력실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CYS-Net 종합정보망 입력(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담 동반자)
 - 군장병 정서심리상담 전담 동반자가 있는 센터별로 수시 입력
 - 호소 유형별, 신규·진행·종결 여부 분류하여 입력 (CYS-Net 종합정보망 입력 양식)

				호소	문제 -	유형(건))					,1-7	· 종결 사례 (명)	~1 =11
병무 스트 레스	성격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부대내 폭력	성	대인 관계	가족	일탈 행동	진로	기타	지원 건수	신규 사례 (명)		진행 사례 (명)

- 매월 시·도로 지원실적 및 지원부대 현황과 함께 보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담 동반자)
 - (예시)

0000년 1월 실적보고

포함내용 : 신규사례 ○○건, 종결사례 ○○건, 지원건수 ○○건, 지원부대 ○○건(○○부대, ○○부대, ○○부대, ...), 수혜 군장병 만족도 00%

- * 유형별 상세실적은 시스템에 입력함으로 보고 갈음함
- 매 분기 여성가족부로 지원실적 및 지원부대 현황과 함께 보고(시·도 담당자)

【참고1】『2018년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고용노동부) 中 청소년동반자 관련 주요 내용

- 세부유형: 직접 일자리 사업
- 채용 관련
 - 1.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35%)
 - (원칙)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 노숙인 등 <참고2 참조>
 - 2. 청년층* 참여목표 비율(20%)
 - (원칙)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의 운영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 원대상자 선정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청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 15세~만 34세인 자
- (조치) 청소년동반자 지원대상자 모집·선정과정에서 취업취약계층/청년층이 우선 선발이 되도록 조치, 의무 채용하여야 함
 - 수동적으로 채용공고에만 의존 지양, 추천요청 등 적극 홍보, 채용 방안 강구
 - 신청자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면 "취약계층 해당여부 자동분석 및 제공"
- 2.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 (원칙)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조치) 전일제 동반자는 원칙적으로 중복참여 불가, 시간제 동반자는 예외적 허용 가능
 - 전일제 동반자 :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시간제 동반자 : 타업종에 전일 근무하거나, 인근지역의 시간제 동반자를 병행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는 선발 불가
 - * 시간제 동반자는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시간제·간헐적 직접일자리 사업에 제한적으로 중복참여 가능하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채용하며, 세부기준은고용노동부 지침 참고 바람
 - ** 시간제 동반자가 타 지자체 시간제 동반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각, 근무여건, 출장거리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

3. 반복참여 제한

- (원칙)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최근 3년 기준)
 -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예외) 2018년 직접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상 청소년동반자 일자리는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동일사업에 반복참여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

■ 일모아시스템 적극 활용

- (원칙)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신청자를 선발하는 시점에 신청자 정보를 '일 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취업취약계층 여부, 중복·반복 참여 여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 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이 원칙
- '일모아시스템(참여자관리)'에 청소년동반자 채용정보와, 활동, 퇴직, 지원실적 등을 상시 입력하여 관리
 - * 1일 이상 참여자 필히 입력관리, 수시 이직에 따른 입력누락이 없도록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철저
 - * '일모아시스템' 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일모아시스템 운용 매뉴얼」참조
- 청소년동반자 채용시 참여자의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 채용할 것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2018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참조
- 참여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가능하나 참여자 선발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선발이 원칙 <참고3>

[참고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싱	가 확인 시 침	·고할 수 있는	자료			
	• 기준 중위	소득 60% 건	강보험료 부과	액(납입액) 한	도('18년)			
	가구원	소득	건경	}보험료 본인부 <u>도</u>	a 라금	노인장기		
	수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보험료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미포함		
	111	1,005,000	33,931	8,532	35,487	포함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미포함		
	4년	1,700,000	57,420	29,823	58,085	포함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미포함		
	3.5	2,210,000	74,856	61,071	75,659	포함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미포함		
저소득층	41	2,712,000	91,152	91,715	92,219	포함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미포함		
	5년	3,213,000	108,405	116,676	109,732	可至常 포함 미포함 포함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미포함		
	0단	3,713,000	125,566	141,554	127,089	포함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미포함		
	/인	4,210,000	141,716	162,101	143,686			
	o കി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미포함		
	8인	4,718,000	158,375	180,088	160,796	포함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미포함		
			175,214	197,912	177,995	포함		
		F 791 000	179,545	200,975	182,496	미포함		
	10인	5,721,000	192,795	215,807	195,964	포함		
장애인	• 장애인증덕	병서,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	l증, 장애진단/	서(전문의)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 20세~만 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					

구 분		대상자 확인	·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위기 청소년	• 보호관취 • 보육원 미만인 • 15~20/	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칠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자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기관이 인정한 자 !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여성가장	구 분 배우자 無 배우자 有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가출·행방불명 장애 질병 군복무 학교 재학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기타 가족 생계 부양	첨 부 서 류 글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의사의 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 ^고	티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의	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	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석	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	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	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참여시?	악(예정)일 시점 만 55서	비 이상 자
청년층	• 참여시	막(예정)일 기준 만 15서	∥ ~ 만 34세인 자

[참고3]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	l업 칟	남여 신	청서				
			_							
접수번호						(신청일)	자 :		.)	
성 명			I	주민등록 국인등	록번호 록번호)		-	-		
주 소	(–)								
이메일주소				전화변 핸드폰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당의() 미동의() 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세대주 여		해당 해당없음	,	세대원수	> (세대주,	동거인제외	21)		명	
		학 교 명	전	공	재 학	기 간		비고		
학 력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로			
		직 장 명	담	당 업	무	X	내 직	및 기 간		
주 요 경 력										
3 =										
		자격증/교육	<u></u> 명			 취득/수.	료시	비고 사료/학위취득 시점 로시점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참여 희망 사업(지역)	1		2	<u> </u>		3				
구직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사업 참여자 (소득 심사 자료로			· 자료로/	서 참여져	사의 부	본인, 배	우자,	
② "개인정보5 바랍니다.(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용·조회·	·제공 동	의서"를	작성	하여 주	스시기	
※ 귀하는 가 <u>(</u>		공에 대하여 <u>동의를</u> 사업 참여자 선건						경우 불	<u>불이익</u>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 조사 포함)
- □ 수집 이용학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가

_ T B M	o 글 게 C O ㅗ ㅇ ㄱ ㅊ ㅗㅠ/ 이 O / C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2 + 8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계층항목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재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

- 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000기관장 귀하

[서식 1]

청소년동반자 근로계약서(예시)(○○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지역	근무형태	

2. 『청소년동반자』의 신분

- 청소년동반자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가 선발·채용하는 자로서, 사업수행주체에 소속된 직원이다.
- 청소년동반자는 대상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한 심리·정서적 교류와 대상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수행주체가 지정한 지역 현장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의 참석, 정보 수집 및 교환, 청소년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행 지역을 근무지역으로 한다.
- 3. 계약 기간 : 20 . . ~ 20 . . (○년 ○○일)

4.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 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 근무 내용
 - 위기(가능)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신뢰감을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대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
 - 대상청소년을 만나 사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청소년동반자 사례회의 및 교육 참석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제반 사업 지원
 - 사례관리 실적 등록(CYS-Net 종합정보망)
 - 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

5. 근로시간

- 전일제 동반자는 주당 40시간, 시간제동반자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청소년을 만나야 하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 청소년(가족, 교사, 친구 포함)과 청소년동반자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되 가급적 대상청소년의 요청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

6. 활동비

- 전일제 동반자는 주 40시간 활동함을 기준으로 월○○○원, 시간제동반자는 주 12 시간을 활동함을 기준으로 월 ○○○원으로 책정한다.
 - 월 활동비에 사례진행비 등이 포함된다.
 - 월 활동비 지급시에 법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다.
- 활동비는 매월○○일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활동비는○○○ 본인 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7. 산재보험

○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휴가 등 복무사항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해당 센터의 자체 내규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9.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품위 손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불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초래,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등급을받은 경우, 사업 규모 변화·예산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체결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할 때는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통지 하여야 한다.

10. 기 타

○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는(은) 위에 명기된 계약 조건에 동의하며,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 . .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인)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인)

위기 스크리닝 척도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 (초기 면접에서 수집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 <u>1차 위험요인 영역</u>: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u>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u>: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중독, 자살의 9가지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담자 이름 : ()

< Part 1 > : 위험요인 영역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11 A)	3. 우울해하고 목표의식이 없다.			
개인 영역	4.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			
0 1	5.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 문제가 있다.			
	6. 지능이 낮다.(경계선급 지능 수준)			
	7. 성적 관심(예 :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예로 응답한 경우 : 부모 간() 부모와 내담자() 형제와 내담자() 기타()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가정 영역	예로 응답한 경우 :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4. 부모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5. 부모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6. 가족이 이웃 및 친족과 왕래가 없다.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을 하는 친구가 있다.			
 또래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및	3.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학교	4.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영역	5.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_*$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sim3$: 일반군 및 잠재군, $4\sim6$: 위험군, 7점 이상 : 고위험군

5 청소년 복자사업

예시 질문(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

<개인영역>

- 개인 3 국가 1. 자신의 외모가 괜찮다거나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2. 하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 6. 학교 공부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또래보다 많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7. 야동과 같은 음란물 때문에 자주 지적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자주 있다.

<가정영역> 4. 부모님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거나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 가족끼리 싸운다.

<또래 및 학교영역>

- 그에 못 되죠요 ^^ 1. 술이나 본드, 부탄가스를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 6.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 없이 가기 싫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

< Part 2>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초등학교 4학년 이하)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인터넷 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4m 44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정 폭력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 पर भप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가출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자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예시 질문(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심하게 상처가 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심하게 욕을 하거나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수에 대해서 심하게 혼낸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자살>

■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고 실제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 (초기 면접에서 수집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 - 1차 위험요인 영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중독, 자살의 9가지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담자 이름 : (

)

< Part 1 > : 위험요인 영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개인	2. 우울해하고 목표의식이 없다.			
개년 영역	3.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			
	4.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 문제가 있다.			
	5. 지능이 낮다.(경계선급 지능 수준)			
	6. 성적 관심(예.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예'로 응답한 경우 : 부모 간() 부모와 내담자() 형제와 내담자() 기타()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예'로 응답한 경우 :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가정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영역	4. 부모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5. 부모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6. 가족이 이웃 및 친족과 왕래가 없다.			
	7.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8.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또래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및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학교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영역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144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지역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사회	2. 지역사회가 빈곤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영역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4 : 일반군 및 잠재군, 5~9 : 위험군, 10점 이상 : 고위험군

예시 질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 <개인영역>
- 5. 학교공부를 이해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 <가정영역>
 - 4. 부모님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큰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 5. 부모가 우울, 불안, 환청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

5 청소년 복지사업

< Part 2>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인터넷 중 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업 중단	학교를 그만 두었고 학업을 계속 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4m 44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기정 포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정 폭력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 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पठ भूमा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성문제	조건 만남(성매매)을 한 적이 있다.			
0.6.41	남 :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이다. 여 : 임신을 한 상태이다.			
가출	현재 기출한 상태이다.			
약물 사용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자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예시 질문(초등학교 5학년 이상) :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위기스크리닝 척도 구조화 면접지>

면접일시	상담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남 / 여

	내 용	예	아니오	미확인
	1. 인터넷사용시간 : 접속시간(시간/	1일)		
	주된 사용 목적 ()	
 인터넷 중독	2. 인터넷 때문에 밤을 샌 적이 있다.			
[인터넷 경투	3.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자주 존다.			
	4. 인터넷을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			
	5.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선생님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 스마트폰 사용시간 : 사용 시간(시	간/1일)		
스마트폰	주된 사용 목적()	
	2.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 다른 것에 집중이 안 된다.			
	3.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4.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			
	5.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이나 선생님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 학교를 그만 두었다면,			
	그만 둔 시기 : ()			
학업	그만 둔 이유 : ()	ı		
중단	2.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 있는가?		
	1 취기에서 표려한 다귀 가지 시민머(가귀 가지 시민머))	
	1.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가한 적이 있다면),			
 학교	폭력 시기 : () 폭력 이유 : ()			
의 <u>폭</u> 력	목력 의규·(목력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지?:예() olilo ()	
77	2. 폭력 이후 현재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어떠한가?) 191	,	
	1)	
	1. 최근 2개월 이내에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였다면,		,	
	폭력·학대 가해자 : ()			
	폭력·학대 시작 시기 : (세)			
-124-1-1	폭력·학대 빈도 : (회)			
가족위기및	폭력·학대 방법 : (
아동학대	2. 폭력·학대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다면,			
	2. 독특·역대도 전에 답된만 적이 있다던, 입원 시기 : (세)			
	급전 시기·(세) 폭력·학대로 인한 입원 횟수 : (회)			
	그그 그에스 보면 B 전 X I · (- 러/			

5 청소년 복자사업

	내 용	예	아니오	미확인					
	3. 가족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또는,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지원)를 받고 있다.								
	4. 폭력·학대 때문에 다른 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								
	1. 성폭력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면,								
	성폭력 시기 : ()								
	성폭력 횟수 : ()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피해자)와의 관계 : ()								
	2. 성폭력 이후 현재 심리적 상태는 어떠한가?)						
	3. 성폭력 이후 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떠한가?		,						
)						
	1.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거나 알선한 적이 있다면,								
조건만남	조건만남(성매매) 시기 : (세)								
(성매매)	조건만남(성매매) 횟수 : (회) 조건만남(성매매) 경로 : ()								
	조건만남(성매매) 경도·()								
	1. 현재 본인 혹은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라면,								
	언제 임신 사실을 알았는가? : (
임신	병원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 예() 아니오()								
	보호자가 알고 있는가? : 모른다() 여자 부모님() 남자 부	모님()	선생님()					
	향후 계획은? : () 1. 이전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면,								
	기: 이전에 가질을 한 식이 있다면, 기출 빈도 : (회)								
	2. 현재 가출한 상태라면 가출 기간은? : (일)								
가출	3. 가출한 후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용 횟수 : (회)								
	4. 가출 후 경험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구걸() 절도() 강도() 폭력[신체·성]() 성관계() 성	[매매()) 약물()	기타()					
01-11	1. 최근 3개월 이내에 술이나 담배를 주 3회 이상 한다.	-1							
약물 사용	2.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 가스, 본드 등을 흡입한 적이 있다	년,							
(18	흡입 빈도 : (주 회) 약물 종류 : 환각제() 가스() 본드() 기타 약물(종류	. :)						
	1.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다.	•	,						
	2. 이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면,		1						
	시도 횟수: (회)								
	최근 자살은 언제 시도하였는지 : ()							
자살	시도 방법 : ()							
	사 유:()							
	3.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내담자와의 관계: ()								
	4. 최근 2개월 이내에 자살 방법을 검색해 본적이 있다.								

위기 스크리닝 척도 활용 및 위험 요소 평정 지침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1.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의뢰되었을 때) 바로 실시한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상담자와 동반자가 내담자의 위기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정하기 위함이므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척도를 활용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최초 평가가 진행된 후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배정되었을 때, 이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의 활용보다는 청소년이 의뢰되었을 때 최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이 척도에 평정하여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직접 평정한다.

이 척도의 의도는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CYS-Net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뢰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스스로에 대해 평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 척도의 애초 의도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정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떨어뜨려 개입의 적절성을 해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 1. 위험 요인 및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을 평정하고 의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자(상담원)"의 평가이다.
 -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평가하는 상담원의 전문적 판단이 위기선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한다. 그러므로 평정자(상담원)는 내담자, 기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해하여 실제적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 2. 위기 스크링닝 척도 결과를 피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 위험 요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이 요인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청소년을 어떤 위기와 일탈로 이끌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 3. 제시된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 요인과 특이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여 둔다. 위기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 이러한 요인 또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4.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나타난 위험 요인의 전체 24개 지표에서 "예"로 응답한 점수 총합에 따른 의뢰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총젂 고려사항 :

위험요인조사	위기 및 문제행동조사	결과해석	비고
0점 ~ 4점	없음	일반 및 잠재군 상담 사례로 다룰 수 있다.	
5점 ~ 9점	없음	위험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위기상담의뢰를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위기상황 및 문제행동 유무를 탐색하도록 한다.
10점 이상	1개 이상	고위험 사례이므로 다양한 지원과 전문적 의뢰를 위하여 심충적 평가와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영역별 고려사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영역에서 한 영역이라도 2점 이상이면 위기상담 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영역별 잠재적 위험 사례이며, 4점 이상이면 영역별 고위험 사례이므로 각 영역에 필요한 지원과 전문적 의뢰를 위하여 심층적 평가와 관리를 실시한다.

[서식 3]											
	국고보	조금	(청]소년육성 :	기금)	Ţ (고부 신기	청서			
사 업 명	청소년동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관	시도명	시도명 부서명									
신생기단	담당자	ਸ਼ੇ				7	전화번호				
교부신청총액	일금	일금 천원(₩))		
					총사	업법	1]				
	지역명	계		국고			지방비(50%)		비고		
				(50%)	계		시·도	시·군·구			
총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12개월) ○ 주요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97	1	1.1 .	의		6]				

20 년 월 일

신청자: 시·도지사(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5 청소년 복자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작성서식)>

- 1.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및 경과
 - \bigcirc
 - \bigcirc
 - 2) 사업지역 현황
 - 동반자 배치 현황 등
 -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 3) 관련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조
 - 지자체 조례·규칙 등(정확한 명칭 기재)
 - 4) 위기 청소년 지원 계획 등
 - *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2. 사업내용(사업 추진 방향)
 - * 사업개요(목적, 기간, 대상 등), 사업내용, 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세부 산출근거) 등을 작성
 -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작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기대효과
- 3. 소요예산 총괄
- 가. 청소년 동반자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원)

전체	예산	1/4	분기	2/4-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 1		रू जो ज
Ч	۲.	것의 #

(단위 : 원)

구분	총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자체부담*	비고
一一七	54	국비(50%)	지방비(50%)	시·세구급*	H 12
활동비					
사업운영비					
계					

-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상담 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 4. 사업목표/평가계획 (※ 세부평가계획안은 1분기 중 수정 송부 예정임)
 - 성과목표 : 청소년 동반자의 수혜청소년에 대한 도움 정도 달성계획
 - 사례관리목표 달성계획
 - 사례관리목표 : (전일제 동반자 00명×48사례)+(시간제 동반자 00명×24사례)
 - * 수석동반자가 있는 경우(수석 동반자 00명×35사례)+(전일제 동반자 00명×48사례)+(시간제 동반자 00명×24사례)
 - 계획
 - \bigcirc
 - \bigcirc
 - 군장병 정서심리상담 지원 계획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지원 계획
- 5. 사업홍보계획 *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기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 \bigcirc
-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bigcirc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시·도명*

2.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청소년 프로그	동반자 램 운영	자체부담*	別	고
		0 7	국비(50%)	지방비(50%)		-,	JE
	활동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운영비						
	컨설팅 (수석동반자)						
총 계							

* 지체부담금은 보조율(50%) 외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지지체 사업예산임. 자체부담금 총액만 기재, 세부사항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청소년동반자)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액	반납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 국비 반납금액은 국비 불용액과 국비에 대한 결산이자 잔액 합계액임
- 4. 집행잔액(불용액) 사유(세부적으로 작성) :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5 청소년 복자사업

[서식 6]

0000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실적

가. 총 평

-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지원인원, 서비스별 제공 건수 등
 - 기타 평가, 보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서술적으로 기재

나. 사업 실적 총괄표

○ 청소년 동반자 배치 및 운영 현황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시군구	전약	<u>일</u> 제	시	비고	
	남	여	남	ਰ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단위 : 명)

구	분	소 계	남	여
0000 (전년	년 계 년도)			
	상반기			
0000년 (당해년도)	하반기			
	계			

○ 서비스별 제공 내용

(단위 : 건)

-	1분	소계	상담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000((전)년 계 년도)									
0000	상반기									
년 (당해년	하반기									
玉)	계									

○ 군장병 정서심리상담 전담 동반자 지원 실적 현황(배치된 시도의 경우만 작성)

시군구	목 표	달성도

- * 수혜청소년(타 기관 연계, 문제해결 등으로 합의종결된 모든 청소년)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 전수조사)
 - 동반자 사례관리회의 운영 실적

개최일시	참석위원수	주요논의사항

- 기타 협의회 등 운영실적
- 홍보실적(언론보도 현황 등)

보도일자	언론매체명	주요보도내용

2. 예산 집행(상세내역)

가. 총괄표

(단위 : 원)

		총액		집행액		기체르	
j	구 분	(자체부담 제외) (A)	합계(B)	국비 (50%)	지방비 (50%)	자체부담*	집행률 (B/A)
	활동비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비						
0 77	컨설팅 (수석동반자)						
	총 계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상담 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5 청소년 복자사업

나. 세부 집행내역

1) 국비(국고보조금)

구분		국고보조금					
↑ 世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비고		
활동비							
사업운영비							
컨설팅 (수석동반자)							
계							

2) 지방비

구분		비고			
一七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1111
활동비					
사업운영비					
컨설팅 (수석동반자)					
계					

3) 자체부담

구분		비고			
丁七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1 112
활동비					
사업운영비					
컨설팅 (수석동반자)					
계					

-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상담 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 3.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bigcirc 잘된 점(우수사례, 사업성과 대표적인 사례로 $2\sim3$ 건)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개선 및 발전방안
 - 주요 활동 사진자료 등

[서식 7]

○○시·도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계획서

-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운영 구성·계획(안)
 - 수석동반자 및 소속 동반자 현황 및 협의체 구성(안)

(2018. 1. 1. 기준)

연번	구분	소속기관	성명	근무기간*	8. 1. 1. 기교) 비고
1	수석동반자	○○센터	000	○○년 ○○월	
2	수석동반자	○○센터	000	○○년 ○○월	
3	전일제동반자	○○센터	000	○○년 ○○월	
4	전일제동반자	○○센터	000	○○년 ○○월	
5	시간제동반자	○○센터	000	○○년 ○○월	
6	시간제동반자	○○센터	000	○○년 ○○월	
7					
8					
9					
10					

5 청소년 복자사업

* 근무기간 :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절사

2.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계획

(단위 : 원)

		계획									
구분	총액	1분	<u>-</u> 기	2분	<u>-</u> 기	3년	<u>-</u> 기	4분	본기		
		예산액	과업 계획	예산액	과업 계획	예산액	과업 계획	예산액	과업 계획		
수석동반자 수당(A)											
컨설팅 운영비(B)											
계											

^{*} 수석동반자를 2명 지정한 경우, A항목만 작성하고, 수석동반자 1명 지정 후, 컨설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A, B 둘 다 작성함

3. 컨설팅 운영 사업 내용 (사업추진 방향)

 \bigcirc

^{**} 매년 1월 15일까지 수석동반자가 작성하여 청소년동반자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도취합 제출

○○시·도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결과보고서

1.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Ä	1 분	총액	비고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수석동반자수당(A)		
정도인이 먼지 친구형	컨설팅 운영비(B)		
계			

- * 수석동반자를 2명 지정한 경우, A항목만 작성하고, 수석동반자 1명 지정 후, 컨설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A, B 둘 다 작성함
- ** 익년도 1월 31일까지 수석동반자가 작성하여 청소년동반자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시·도 지자체를 통해 여성가족부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센터 보관

2.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 11
집행일자	집행세부내역	집행액	집행증빙
1분기 소계			
2018/00/00			1
2분기 소계			
2018/00/00			2
2018/00/00			3
3분기 소계			
2018/00/00			4
4분기 소계			
2018/00/00			5

* 증빙서류 : 통장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등

3.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회의 운영주기, 회의시점, 회의별 주요 협의사항 등
- 신규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현황 등
-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5 청소년 복자사업